

내용증명통지서

제 목 : 증여계약 해제의 건

발신인 : 홍봉유

서울시 서초구 바우뒀로 7길 51, [REDACTED]

수신인 :전 [REDACTED]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REDACTED]

티지)

1. 잘들 지내고 있느냐.
2. 나는 너희들에게 서울 중구 저동 2가 72-15를 좋은 마음으로 증여하고 일생을 편히 살고자 하였다.
3. 그러나 너희들에게 돌아온 것은 5년간의 냉대였다. 전화 한통을 하지 않고, 내가 전화를 하여도 받지 않았다. 보고 싶어 집을 찾아가면 문전박대를 하였다. 하지만 다 내가 너희들을 잘못 키운 죄라고 생각하고 눈물을 삼켰다.
4. 그렇게 아무 소식 없던 너희들이 재산에 관해서만 관심이 많구나. 얼마 전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너희들의 배우자 이름으로 가등기 예약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5. 이는 내가 너희들에게 증여를 할 당시 약정서에 위반되는 행동들이다. 재산만 가로채고 연락한통 없이 냉대한 것도 암묵적으로 나에게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지만, 가등기를 한 것은 약정서 제 2항(증여물건에 대한 매매, 저당권설정, 가등기 설정 등 일체의 법률행위를 하지 않는다.)에 명시적으로 위반된다.
6. 따라서 너희들에게 증여한 것을 취소한다. 증여물을 환원하는데 발생하는 세금 등 기타 제반비용은 너희들이 부담해야 한다.
7.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좀 더 착하게 살기를 희망한다.



갑 제5-1호증

2015. 12. 14

홍 봉 유 홍봉유

이 우편물은 2015-12-14
재-3152001000659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서울우편등우체국장

갑 제5-1호증